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 설계도 전자 데이터의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금지 청구사건

2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3년(와) 제10308호, 평성14년(와) 제2833호
판결 일자	2003. 2. 27.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피고 반소 기각
원고	뉴 크리에이트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지티 재팬 외 2명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의 설계도를 하드 및 CAD (Computer Aided Design)에 의한 전자 데이터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의 특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02 사건 개요

원고는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1988년 5월 12일 설립 됐다. 원고가 1988년 설립 때부터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의 제조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현재 총 약 6000장에 이르는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의 설계도를 하드 및 CAD (Computer Aided Design)에 의한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1997년 설립되어 토목 공사와 조경 공사의 설계, 시공, 투자 및 컨설턴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1999년 9월 무렵,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들을 고용하여 늦어도 1999년 10월 초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의 설계를 수행시키고, 이어 제조, 판매하고 있다.

원고 다 🗘 🗘 피고

소송에서 영업비밀의 특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별지 영업비밀목록 기재의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하다.

본건 전자 데이터는 총 6000장에 달하는 설계도에 관한 것으로서 양, 내용 및 형태 에 비추어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본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출원 공개에 의해 공개 된 기술 사상과 본 건 기술 사상은 서로 다르다. 이전 가처분 사건의 신청서에는 본건 정보와 같은 구체 적인 형상, 치수, 선정 및 가공에 대한 정 보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건 전자 데이터에 관한 총 약 6000 장에 이르는 설계도의 전자데이터인데, 일부 도면을 가려내어 복제하는 것보다 전체 복 제가 쉽다. 원고의 영업비밀목록은 영업비밀에 해당 하는 기술정보에 대해 전혀 특정되어 있 지 않다.

원고의 세라믹 콘덴서 적층기 및 인쇄기는 상당 대수가 비밀유지계약 없이 판매되고 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파악가능하다.

원고가 특허로 공개 한 기술 정보는 영 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처분 사건 신청서에 일부 원고의 세라믹 콘덴서 적 층기 및 인쇄기에 관한 기술이 공지되었 다.

만일 본건 전자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불과 2장의 부품 도면을 우연히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6000장 이상의 설계도에 관한 본건전자 데이터의 부정 취득을 추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

04 판결 요지

소송상 영업비밀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공개 할 필요가 없이, 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이라는 소정의 요건충족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 취득 등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그 부정 취득 행위 등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본건 데이터에 관한 총 약 6000 장에 이르는 설계도를 일괄하여 취득하려면 하드 도면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보다, 전자 데이터를 전자기억매체에 복제하여 취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또한 개조 및 신규 설계 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도 크며, 본건 전자 데이터는 극히 일부 도면을 일부러 가려내어 복제하는 것보다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 인정된다. 원고 회사의 도면과 피고 회사의 도면을 비교하면 자유롭게 설계가 허용되는 부분까지 모두 일치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설계를 완성한 것은 피고들이 퇴사하고 약 40일 후인 것이 인정되며, 설계는 잘 아는 사람이 하더라도 위 기간보다는 더 걸린다는 것을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도면을 부정취득 한 것으로 보인다.

05 Key Point

본건은 영업비밀침해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방어의 방법들이 나타나 있다. 침해혐의자로서는 역설계가능에 따른 공지성, 특허공보 등의 다른 문건에 의한 기술의 공지, 직접증거는 별로 없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영업비밀보유자는 역설계의불가능성과 과도한 기간소요, 공지된 기술과의 엄밀한 비교를 통한 기술적 차이 및 가치의 입증 등에 주력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압수,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도와 같은 침해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본건과 같이 입수된 설계도가 겨우 2개에 불과하더라도 설계의 난이도, 설계기간의 부족, 전자데이터 일괄취득의 개연성 등의 논리전개에 따라 일체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침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인바 쉽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